

2024년도 「기술이전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(2차)

2024년도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기술이전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 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9월

울산광역시,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1. 지원개요

- (지원목적) 이전기술 조기 사업화 달성을 통한 산업 진출 기회 확대 및 기술이전 생태계 활성화
- (지원규모) 5개사 내외, 기업당 최대 12,000천원(기업부담금 10% 이상, VAT 별도)
- (지원기간) 협약일 ~ 2024. 11. 30.

2. 지원대상

- (지원대상) 울산지역 소재 기업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업
 -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업(2021 ~ 2024)
 - 당해연도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
- ※ 이차전지 및 유망산업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이전기술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
- ※ 예정기업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지급(사업 신청 시 별지6 협약서 제출)

3. 세부 지원내용

- (지원절차) 협약체결 및 관련 서류(사업계획서 외) 제출 등 필요 조건 충족 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, 지원금은 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직접지원
- ※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○ (지원내용)

- 시제품제작 및 시험·인증 지원(패키지 지원 가능)
- 시제품제작의 경우 전문가 기술검증 또는 지원 결과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必

NO	프로그램명	주요내용	지원금액
1	시제품제작	도입기술의 시제품 설계, 제작지원,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	기업당 12,000천원 이내
2	시험·인증	국내·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, 성능, 규격, 표준화 등	(기업부담금 10% 이상, VAT 별도)

○ (유의사항)

- 부가가치세(VAT)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
-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(인건비, 간접비 등 불인정)

4.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
공고기간 (접수기간)	▪ (온라인) 2024. 9. 24.(화) ~ 상시
접 수 처	▪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s://platform.utp.or.kr/ 접수
접수절차	① (회원가입)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으로 가입 필수 ※ 신규 회원 가입 시, 관리자 승인 대기 시간 발생함(승인 1일 소요)
	② (접수절차) 로그인 → 공고목록 확인 → 해당 공고조회 →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→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
	③ (파일 업로드) 사업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붙임 양식 모두 작성한 후,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업로드
	④ (최종제출)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
유의사항	① 과제 내용 및 사업비(단위)에 대한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-mail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※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,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④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 ⑤ 필요시 온·오프라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5. 제출서류

NO	제출 서류	비 고		
		필수	1부	양식
1	사업신청서	필수	1부	양식
2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필수	1부	별지 1
3	정부사업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	필수	1부	별지 2
4	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	필수	1부	별지 3
5	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	필수	1부	별지 4
6	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필수	1부	별지 5
7	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확약서 * 기술이전 계약서는 자율양식 활용	필수	1부	별지 6
8	공급자현황 카드	필수	1부	별지 7
9	공급자 자격요건 확인사항	필수	1부	별지 8
10	(개인사업자)사업자등록증 사본 (법인사업자)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	필수	1부	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11	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('21~'23년) ※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전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	필수	각 1부	·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(원본 대조필) ·가결산 재무제표 불가
12	고용실적증빙서류(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)	필수	1부	공고일 이후 발급분

6. 평가절차 및 기준

□ 평가절차

평가절차	일정(안)	세부내용
신청서 접수	9.24.(화) ~ 상시	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
▼		
사전검토	추후 안내	중복지원 여부, 제재기업 여부, 기업 신용정보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 검토
▼		
발표평가	추후 안내	사업화 전략, 사업수행역량 등 평가를 위한 발표평가위원회 개최
▼		
선정 통보	추후 안내	이전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최종 선정 통보

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사전검토

-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후 발표평가 가부 결정
-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참여 제한 여부,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, 채무불이행 및 기업 재무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
 - ※ 울산TP 자체적으로 제재기업 및 과제 중복성 확인 후 울산TP 원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발표평가

- 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진행
 - ※ 평가위원회는 각 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pool에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구성
-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자 혹은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(발표 10분, 질의응답 5분)
-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배점	항목별 평가내용
필요성(10)	10	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
적정성(10)	10	추진계획 및 목표달성 계획의 적정성
타당성(20)	10	지원내용, 범위, 일정의 구체성
	10	지원금액의 적정성
가능성(20)	10	사업추진 전략의 우수성 및 성과달성 가능성
	10	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
기술이전 및 사업화(40)	10	이전기술의 우수성 및 유망성
	20	사업화 제품(기술)의 차별성
	10	성과활용 계획의 적정성
합계	100	-

□ 선정기준

- 지원 필요성, 계획의 적정성,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-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기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
7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,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누락 서류가 발생할 경우,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※ 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
- 선정 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,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 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
-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
-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,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

8. 추진 절차 및 일정

추진 절차	세부 내용	추진 일정(안)
사업공고·과제신청	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(참여기업 → 울산테크노파크)	'24. 9월
↓		
사전검토	중복지원, 제재기업 여부 등 자격요건검토	추후 안내
↓		
발표평가	참여기업 최종 선정을 위한 발표평가	추후 안내
↓		
선정 통보	최종 선정 통보(울산테크노파크 → 참여기업)	추후 안내
↓		
OT 진행 및 협약 체결	사업 일정 안내 등 OT 진행 및 협약 체결	추후 안내
↓		
중간점검(필요시)	사업비 집행률 확인을 위한 중간점검 진행	추후 안내
↓		
최종점검(필요시)	과제 수행 완료 확인을 위한 최종점검 진행	추후 안내
↓		
결과보고서 제출	과제 최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제출	'24. 12월
↓		
사업비 지급	결과보고서 확인 후 사업비 지급	'24. 12월

※ 방법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중간 및 최종점검은 시제품 제작 등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함

9. 사전 지원 제외 대상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10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4조(제재처분의 사후관리), 동법 시행령 제59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 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(단,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되었을 때 잔여 사업비 사용 가능)
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
 - 1)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- 2)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 - 3)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
- ①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- ②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- ③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- ④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-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- ⑥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수급 및 사용하는 행위

- 4)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- 5)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

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- 6)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
 -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
 -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

10. 관련 법령
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
11. 문의처

-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기업지원실 김동호 연구원
 - TEL : 052-219-8730 / E-mail : kim86515@utp.or.kr

붙임.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. 끝.